



'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

형사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풀이[8]

| 오상훈 교수 |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



* QR코드를 통해
"형사법의 끝판
왕" 형사법 오상
훈 교수의 강의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자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자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1개
③ 3개② 2개
④ 4개난이도 : 삼
[해설]출제영역 : 수사
정답 : ②

※ 적절한 것은 Ⓢ, Ⓣ 2개이다.

- Ⓐ 제195조
- Ⓑ 제197조의2제1항
-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제1항).
- Ⓓ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자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7조의3제4항).
-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제1호).
- Ⓕ 검사는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60일 이내: X, 30일 이내: X)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제2호).

30.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친고죄에서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며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

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난이도 : 하
[해설] 출제영역 : 수사
정답 : ④

- Ⓐ 대판 2011.6.24, 2011도4451
-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친고죄의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 Ⓒ 대판 1985.11.12, 85도1940
- Ⓓ (X)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판 2010.7.15, 2010도4680).

31.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 Ⓒ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난이도 : 하
[해설] 출제영역 : 수사
정답 : ③

-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제244조의2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할 수 있다(제221조 제1항).

- ② (X)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 ③ (O) 대판 2009.6.23, 2009도1322 ※ 참고인진술조사(제312조 제4항) "적설반특"
- ④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제1항).

32.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망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 Ⓐ (O) (X) (X) (X) (X)
- Ⓑ (X) (O) (O) (O) (O)
- Ⓒ (O) (X) (X) (X) (O)
- Ⓓ (X) (O) (O) (O) (X)

- Ⓐ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이 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 압수한 때부터: X
- Ⓑ (O) 제200조의3제2항, 제3항
- Ⓒ (O) 제200조의3제1항
- Ⓓ (X) 제216조 제1항 제1호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의자 수사를 '수색'으로 개정하고,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부분을 신설함